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심 사 보 고 서

2025. 8.
교육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5. 2. 11. 서명옥의원 등 10인

나. 회부일자 : 2025. 2. 12.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426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2025.6.11.)

상정 · 제안설명 · 검토보고 · 대체토론 · 소위원회

제426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2025.6.30.)

상정 · 축조심사

제427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2025.7.8.)

상정 · 축조심사 · 의결(대안반영 폐기)

제427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2025.7.8.)

상정 · 소위심사보고 · 찬반토론 · 의결(대안반영 폐기)

2. 제안설명의 요지

(서명옥 의원)

미국, 프랑스 등 선진국에서는 아동·청소년의 스마트 기기 중독을

예방하기 위하여 교내 스마트 기기 사용을 제한하는 등의 입법을 실시하고 있음. 일례로, 프랑스에서는 지난 2018년 모든 공립 및 사립 초·중학교에서 휴식 시간을 포함하여 학교에 있는 모든 시간 동안 스마트폰 및 기타 인터넷 지원 기기를 소지는 하되 사용은 금지하는 법안이 가결되었음.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현행법상 학생들이 교내에서 스마트 기기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아무런 제약이 없는 상황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2023년 기준 만 3~9세 사이의 아동 4명 중 1명은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에 속하며 만 10~19세의 청소년의 경우, 위험군 비율이 40.1%에 달함.

스마트 기기 등의 중독 현상은 자아 정체성이 형성되는 초기단계인 초등학생 시기에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는 조사결과도 있음. 한국언론진흥재단의 <2022 10대 청소년 미디어 이용 조사> 결과 발표에 따르면 초등학생(36.2%)이 중학생(29.9%)과 고등학생(20.0%)보다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 업로드 경험률이 높은 것으로 드러남.

이에 학교당국이 학생들의 올바른 스마트 기기 사용을 장려하는 정책을 교육과정에 반영하고 학생들의 스마트 기기 중독을 예방하기 위하여 노력하도록 하는 의무를 법에 명시하고, 초등학생의 스마트 기기 중독을 예방하기 위해 교육 목적의 사용이나 긴급한 상황 대응 등 학교의 장과 교원이 허용하는 경우 외에는 교내에서 스마트 기기 사용

을 제한하기 위한 근거조항을 마련하려는 것임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 윤상열)

개정안은 학교의 장과 교원이 스마트기기 사용 교육을 위해 마련된 시책을 교육과정에 반영하도록 하고, 학생들의 스마트기기 중독 예방을 위하여 노력할 의무를 법에 명시하려는 것으로,

이를 통해 학교의 장과 교원에게 학생들의 스마트기기 중독 예방을 위한 노력 의무를 명시하여 학생들의 스마트기기 중독 예방 및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으로 그 취지가 인정됨.

참고로, 안 제20조의3(스마트 기기 사용 교육)과 관련하여 현재 「교육기본법」 제22조의5(2024.12.20. 시행)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과도한 스마트기기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하여 올바른 스마트기기 사용에 관한 소양교육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4. 대체토론 요지

없음

5.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내용

(소위원장 문정복)

조정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1건 및 서명옥 의원이 대표발의한 1건, 이인선 의원이 대표발의한 1건의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합·조정한 대안을 제안하고, 각 개정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함.

6. 찬반토론 요지

없 음

7. 심사결과

대안 반영 폐기